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889호

나. 제출자 : 이순자 의원 외 14명

다. 발의일자 : 2015년 11월 13일

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2. 제안이유

○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어휘의 정비를 통해 조문을 개정하여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
-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를 통한 조문 개정(안 제1~4조,제6조)
- 상위법령 규정 내용 중 미반영된 내용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북한

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 중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별표를 제외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와 같음

〈신·구 대비표〉

구분	현행	개정안
제명	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<u>신</u> <u>문·복권판매대, 매점</u> 및 식음료 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 한 조례」	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<u>매</u> <u>점</u>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 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
제1조 중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」 제16조의2 <u>에 따라</u>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<u>「국가유공자</u>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」제26조의3에 따라
	한부모가족의 모(모) 또는 부 (부)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 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 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

제2조제2항 중	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 신문판매대	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(이하 "매점
제3조 중	<u>신문판매대</u>	<u>매점</u>
제4조제1호 중	<u>신문판매대</u>	<u>매점</u>
제4조제2호 중	독립유공자유가족	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제5조제1항 중	한부모가족의 모(모) 또는 부 (부)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 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 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
제6조 중	<u>신문판매대</u>	<u>매점</u>
	<u>신문판매대</u> 모자가정의 여성	<u>매점</u>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
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<u>보</u> 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<u>한</u> <u>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</u> 중 국
별표 중	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<u>독립유공자유가족</u>	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 가족
별표 중	제외한 자	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
별표 중	제외한 자 <u>독립유공자유가족</u>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<u>의료보</u>	자를 제외한 자 <u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</u> <u>가족</u>
별표 중	제외한 자 <u>독립유공자유가족</u>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<u>의료보</u> 호 수급자	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 가족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<u>수급자</u>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○ 조례안 제1조와 제5조제1항, 별표와 관련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¹⁾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

^{1) 「}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2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
- 현행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(허가)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, 미반영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 하려는 동 개정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
- 한편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,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,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^{2) 「}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(생업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.